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권영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,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, 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서도 준용하도록 함(안 제37조제3항, 제39조제4항)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